성주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5년 9월 7일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7월 21일
나. 제 안 자 : 성 주 군 수
다. 회부일자 : 2005년 9월 1일
라. 상정일자 : 제127회 성주군의회(임시회) 조례심사 특별위원회
- 제1차 위원회 (2005년 9월 2일) 상정
- 제2차 위원회 (2005년 9월 7일)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환경보호과장 : 송용섭)

가. 제안이유
○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·공포되어 2004. 7. 30부터 시행됨에 따라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○ 공중화장실, 개방화장실, 이동화장실, 유료화장실로 구분(안 제1장)
○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유지·관리(안 제2장)
·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자화장실의 대·소변기수의 합이상 설치
·전체면적 33㎡이상 대변기 7개(남자2, 여자5) 소변기 3개이상 설치
·공중화장실유지·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및 편의용품 비치
○ 개방화장실 지정·운영(안 제3장)
○ 이동화장실 설치·관리(안 제4장)
○ 유료화장실 신고(안 제4장)
○ 과태료 부과(안 제6장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김일수)

○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성주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(조례에의 위임)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·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조문의 구성과 내용등이 적정하게 편제되어 있어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○ 앞으로 진정한 군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사후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, 동 조례(안)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를 위한 경비 등 재정적 지원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특이사항 없음)

5. 토 론 요 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첨부 : 성주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(안) 사본 1 부.